

• 정책 •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공포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듯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2001. 1. 26, 법률 제6379)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가축의 혈청검사 및 검역시 혈청검사 및 검역 수수료 규칙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각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혈청검사 또는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과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소속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는 혈청검사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지정검역물(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역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우편물로 수입된 지정검역물의 검역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지정검역물 검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지정검역물외의 동물과 그 생산물 등의 검역

제3조(수수료)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역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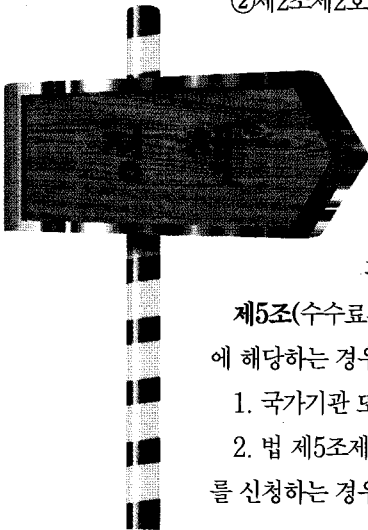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납부하는 혈청검사 및 검역수수료 : 현금
2.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혈청검사 수수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②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혈청검사 또는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안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표지 또는 검역필의 표기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제6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혈청검사 또는 검역을 받기 위하여 채취하거나 제출된 검사시료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검역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사시료는 그 검사가 끝난 후 검사·검역을 신청한 자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닭	뉴캐슬병	혈구응집억제반응법 효소면역법	1수 1수	3,900원 4,500원
	가금인플루엔자	효소면역법 혈구응집억제반응 한천겔침강반응법	1수 1수 1수	5,500원 4,100원 2,700원
	추백리	전혈(혈청)응집반응법	1수	2,100원
	가금티푸스	전혈(혈청)응집반응법	1수	2,100원
	닭마이코플라즈마병	혈청응집반응법	1수	2,300원
	닭뇌척수염	효소면역법	1수	5,000원
	닭전염성기관지염	혈구응집반응법 효소면역법	1수 1수	4,600원 4,500원
	닭전염성F낭병	한천겔침강반응법 효소면역법	1수 1수	2,600원 5,000원
	닭산란저하증	혈구응집반응법	1수	4,000원
	닭전염성빈혈	효소면역법	1수	5,500원
그밖의 가축	톡소플라즈마병	LATEX응집반응법	1두	3,500원
	광견병	효소면역중화시험	1두	10,000원
	수포성구내염	효소면역법	1두	5,300원
	아프리카마역	효소면역법	1두	5,300원
□ 기 타 -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혈청검사 대상 질병외의 질병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당해 질병과 가장 유사한 질병의 검사방법 수수료를 적용한다. - 같은 질병에 대하여 2 이상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방법중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정책 •

[별표 2]

검역수수료(제3조제2항관련)

1. 검역신청수수료

가. 동물

구 분	수수료	비 고
1.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시슴	5만원	신청건당
2. 개 및 고양이	1만원	신청건당
3.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신청건당
4. 그밖의 동물	2만원	신청건당

나. 동물외의 검역물 : 신청 건당 2만원.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동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

2. 정밀검사수수료

가. 정밀검사수수료는 다목의 검사질병별로 구분하여 해당 질병을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검사질병명	수수료
뉴캐슬병(혈청검사)	3,900원
뉴캐슬병(병원체동정)	74,000원
추백리	2,100원
가금티푸스	2,100원
닭마이코플라즈마병	2,300원
닭전염성기관지염	4,500원
닭전염성F낭병	2,600원
가금콜레라	7,600원
닭뇌척수염	5,000원
닭전염성후두기관염	3,300원
가금인플루엔자(혈청검사)	2,700원
가금인플루엔자(병원체동정)	73,500원
마력병	3,100원
살모넬라균감염증	7,600원

나. 정밀검사수수료의 적용단위는 동물 1마리별로 하되, 병아리·꿀벌 및 그밖의 (지정)검역물은 검사신청 건별로 한다.

다. 질병별 정밀검사수수료

